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가단523773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4. 18.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7,406,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2023. 1. 27.까지는 연 8.03%,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7,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위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다만, ‘피고 D’은 ‘망 D’으로 본다) 중 피고 B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음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C에 청구원인이 별지2 ‘청구원인’(다만, ‘피고 D’은 ‘망 D’으로 본다) 및 별지3 ‘보충한
청구원인’ 중 피고 C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장원지

별지